2000-4-1

보 험 약 관

(무배당 3대암보장특약)

보험약관 목차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성립
제2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3조 특약의 무효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9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성립)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각각 주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특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의 전일 이전에 제10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하며,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성립)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전 까지로 하며,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70세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성립)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①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3대암"이라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3대암"을 말합니다. (이하 "3대암" 및 "여성3대암"을 "3대암"

이라 합니다)

1. "3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3대암분류표(별표2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여성3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여성3대암분류표(별표3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3대암으로 최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3대암진단확정금 지급(단, 1회의 3대암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3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대암사망보험금 지급
3.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악성신생물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제12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금급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3. 3대암진단서(3대암 진단확정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제3호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3대암진단 확정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3대암으로 최초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3대암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3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또는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별표 2)

3대암 분류표

약관 제10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규정하는 "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4.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신생물	C24
5.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3)

여성3대암 분류표

약관 제10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규정하는 "여성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3.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4.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C54
5. 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C55
6.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 류 번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 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C69 – 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 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